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간병 급여화 〉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42호)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12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1.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42호)	1
2.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12호)	2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	3

I. 개요

1.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4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6. 20.
- (3) 회 부 일 : 2024. 6.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증가 등 가족구성의 변화로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간병비용 또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함께 늘어나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간병 도우미료는 약 27.5% 상승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들은 하루 평균 약 13만원에서 15만원의 사적 간병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등).

2.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1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지혜의원 등 19인
- (2) 제 안 일 : 2024. 7. 9.
- (3) 회 부 일 : 2024. 7.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구구조 변화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간병인을 구하기 어렵고, 장기입원 시 진료비에 비해 과도한 간병비를 지출하기도 하며, 간병비 지출을 대비한 민간 간병보험 시장이 확대되는 등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간병수요의 제도적 해결을 위하여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말 기준 75,000여개 수준으로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이에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

가. 개정안의 내용

□ 2건의 개정안은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 서영교의원안은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도록 하고, 간병 요양급여로 인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받은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두는 것이며(안 제41조제1항제8호, 제44조의2 및 신설 등),
- 박지혜의원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중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현 행	서영교의원안	박지혜의원안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제41조(요양급여) ①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8. 간병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44조의2(간병에 관한 특	

<신 설>

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간병의 요양급여(이하 이 조에서 “간병요양급여”라 한다)로 인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0세 이상인 가업

제115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신설></u> <u><신설></u>	제115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u> ----- ----- ----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u> 2.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u>	<u>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u>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

⑤ (생 략)	<u>담금을 면제받거나 타</u> <u>인으로 하여금 면제받</u> <u>도록 한 자</u>	
---------	---	--

나. 검토의견

□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간병인을 구하기 어렵고, 장기입원시 진료비에 비해 과도한 간병비를 지출하기도 하며, 과부담 간병비 지출을 대비한 민간 간병보험시장이 확대되는 등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8.4%로 추계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약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간병비 부담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참고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023년 4월 간병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 또는 가족이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구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3.4%에 달하였고, 간병인 이용 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간병비 부담(65.2%)을 꼽았음.

- 사적 간병비 부담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간병 도우미료 상승률²⁾은 전년 대비 증가

1) 서울대학교 추산 사적 간병비 : ('08) 3.6조원 → ('18) 8.0조원 → ('22) 10조원

율이 2020년 2.7%에서 2022년 9.3%로 상승하였음.

□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15년도부터 도입³⁾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됨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전인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간호인력을 늘리고, 병실환경을 개선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입원환자에게 충실한 케어가 가능하도록 포괄적 간호를 제공하는 입원서비스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현재 시범사업 단계로 2023년 12월 말 기준 참여 대상인 병원급 의료기관⁴⁾ 총 1,543곳 중 실제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713개소(46.2%)에 불과하며, 참여 기관 대부분은 전체 병동 중 일부만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간병서비스 수요가 많은 요양병원에는 적용되지 않아⁵⁾ 사적 간병비 부담 경감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2) 간병 도우미료 상승률(통계청) : ('20) 2.7% → ('21) 6.8% → ('22) 9.2% → ('23) 9.3%

3) 현재 시범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는 간병서비스를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의 일환으로 급여화하고, 사적 간병을 급여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4) 「의료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5) 이와 관련하여 2024년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개시되어 동 사업의 집행 경과 및 효과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 수 >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3
합계	1,396,039	1,625,488	1,944,493	2,041,684	2,466,537	640,867
건강보험	1,231,753	1,446,950	1,736,842	1,824,410	2,196,540	572,357
의료급여	137,878	147,054	168,043	173,003	214,996	54,033
기타	26,408	31,484	39,608	44,271	55,001	14,477

자료: 보건복지부('기타'는 산재보험 등을 포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출현황(진료년도 기준) >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급여비 지출	6,495	7,453	9,004	9,667	11,614

자료: 보건복지부(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료에 일반병동 입원 시 입원료 차이 값으로 추산함)

< 보건복지부 운영 간병서비스 현황 >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거법률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24.4 신규사업)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 모두 높은 환자 - 의료 최고도·의료고도 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 수준 환자 -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를 통해 선정	본인부담률 40~50% 전제, 간 병비 인건비* 지원 * 월 급여 258만원, 퇴직금 및 보험료 54만원	「보건의료 기본법」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 급여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자	적정 제공인력 배치를 통한 팀 간호 체계의 총체적인 전문 간 호 제공과 병동 환경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등 간호·간병통 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 을 갖춘 병동에서 입원서비스 제공	「의료법」
노인장기 요양보험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 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 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 목욕 서비스, 간호 서비스,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노인 장기요양보 험법」

장애인활동 지원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 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 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가사간병방문 지원서비스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된 원자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요양급여대상⁶⁾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간병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사회적 연대를 통한 공적 부담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음.

다만,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추가하는 경우 간병 수요 충족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한 점이 있고, 간병서

6)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바⁷⁾,

간병의 급여화로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이라는 긍정적인 입법취지와 함께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 수요 증가 우려에 대한 대책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⁸⁾,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⁹⁾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므로 이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¹⁰⁾

7)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는 246만 6,537명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따른 급여비 지출액은 1조 1,614억원으로 추산됨.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08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9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81호)」

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083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101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98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0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73호)」

10)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급여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연계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료급여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이하 “의료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급여(약제를 제외한다) :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의료급여(약제로 한정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된 것
3.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은 의료급여대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입원환자 및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적정한 간병 지원을 위해서는 실태조사,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타당성, 실행가능성 및 영향을 검증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간병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

□ 대한의사협회

-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동 법률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건강보험 재정은 2028년 준비금 소진(예산정책처 추계)이 예상되고, 불필요한 간병서비스 이용을 증가시켜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고령화 대응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니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함.

문 의 처
02)6788-5503